

석유 이동판매소의 운영에 관한 고시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5호에 규정에 의한 석유 이동판매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한다.

1994. 6. 27

상공자원부장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석유 이동판매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사업자) 석유 이동판매소를 영위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판매업자로 한다.

1.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유소허가를 받은 자.
2.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일반판매소(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단위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일반판매소 포함) 신고 수리를 받은 자.

제3조 (취급유종) 석유 이동판매소의 취급유종은 등유·경유(차량용은 제외)에 한한다.

제4조 (이동판매소 신고절차 등) ① 석유 이동판매소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 2서식의 신고서에 주유소 허가증 또는 일반판매소 신고필증(또는 소방법령상 석유판매취급소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2조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의 관할 시·군·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동판매소의 신고 수리를 받은 자는 석유사업법령, 소방법령, 자동차관리법령,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동판매소를 영위하여야 한다.

제5조 (사후관리) ① 시·군·구청장은 소방관서, 자동차 및 계량기 관리부서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이동판매소가 안전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한다

② 시·군·구청장은 이동판매소가 취급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 또는 협조하여 석유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신고수리 받은 이동판매소는 이 고시에 의하여 신고수리 된 것으로 본다.